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03

발의연월일: 2024. 9. 24.

발 의 자:임광현·정일영·박민규

김태년 · 정진욱 · 윤호중

이연희 · 정성호 · 안태준

강준현 • 박홍배 • 한민수

이기헌 · 강유정 · 김민석

황정아 · 김기표 · 문금주

윤종군 • 이재관 • 민홍철

송재봉 · 정준호 · 안규백

차지호 • 박찬대 • 박희승

최기상 · 임미애 · 조계원

김남희 의원(3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파생상품 소득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포괄하고,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20%와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임.

한편 현행법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국내주식 관련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본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천만원의 기본공제액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위축을 막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므로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기본공제액 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 은 과세요건인 과세표준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과세요건법정 주의에 따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18제1항제1호 및 제126조의4제4항).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18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억원"으로 한다.

제126조의4제4항 중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억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18(금융투자소득 기본공	제87조의18(금융투자소득 기본공		
제) ①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제) ①		
거주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			
득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			
금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공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의 합	1		
계액에서 공제할 금액: <u>5천만</u>	<u>1억원</u>		
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6조의4(국외전출자 국내주식	제126조의4(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외전출세를 계산하기 위	4		
한 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소득금액에서 연 <u>5천만원의 범</u>	<u>1</u> 억원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금액</u>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 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